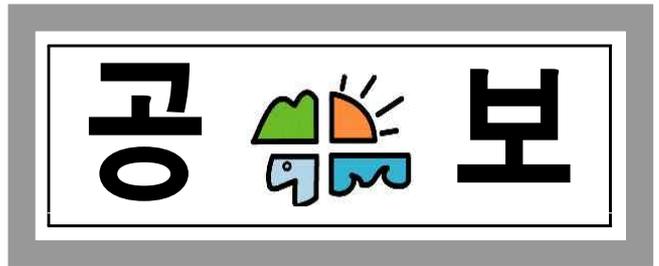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97호 2012년 5월 2일(수)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3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통지 공시송달 공고..... 4

회 램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02.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05. 02 - 2012. 5. 15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2. 4. 24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안 광 길
	주 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77-10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지위치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77-10번지
	건축물현황	시멘트블럭조, 슬라브지붕, 주택, 21.38㎡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033-639-27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후 그 처분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어 동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2. 5. 02.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05. 02 - 2012. 5. 15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2. 4. 24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이 성 복
	주 소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77-10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의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대지위치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577-10번지
	건축물 현황	시멘트블럭조, 시멘트기와밧스레이트지붕, 주택, 71.62㎡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033-639-276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 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통보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2. 05. 02. ~ 2012. 05. 16.(15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제목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통지 공시송달	
나. 대상자	성 명	김재성 (6909**-1*****)
	반송주소	속초시 변영로 170, **2호(영랑동, 동진오피스텔)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법 제14조 위반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이행강제금 부과(금194,010원)	
	위치	속초시 금호동 482-208번지
바. 처분근거	건축법 제80조	

4.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강원도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033-639-2457】**

2012. 5. 2.

속 초 시 장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속초시청 도시디자인과 건축지도담당
- 연 락 처 : 033) 639-2457